

입법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1. 개정 이유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포함하여 가축방역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림피스킨병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안 제22조의5)
- 나. 역학조사를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기 위한 조건에 추가하고, 연기 명령이 가능한 대상에 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추가(안 제23조)
- 다.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변경신고·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 별표 1의8, 별표 1의9)
- 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종류, 분리·분양·이동 등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 준수사항 및 수입허가 시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32조제4항 및 별표 1)

마.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가축
방역사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령진드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제2조의3(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제2항제5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한다.

제7조의9제1항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7조의10 중 “별표 1의5와”를 “별표 1의6과”로 한다.

제7조의11제1항 중 “별표 1의6”을 “별표 1의7”로 한다.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2(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의5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②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신청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의8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13(가축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축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8서식의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관리대장에 그 변경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14(가축폐기물처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를 신고하려는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9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1호의20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15(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조의8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독설비·방역시설 및 방역기준은 별

표 1의9와 같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역본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방역본부”로 한다.

3. 「수의사법」 제16조2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갖춘 자 제2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조제10호나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의15서식”을 “별지 제1호의21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7”을 “별표 1의10”으로,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별지 제1호의22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17서식”을 “별지 제1호의2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별지 제1호의22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17서식”을 “별지 제1호의2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의18서식”을 “별지 제1호의2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의19서식”을 “별지 제1호의25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3 중 “별표 1의8”을 “별표 1의11”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별표 1의9”를 “별표 1의12”로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

지 제2호2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 ·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2. 분양받으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사용계획서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분양받으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동하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사용계획서
2. 이동하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사용 및 보유 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당해 연도(12월 31일 기준)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4(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법 제14조의

2제1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2.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3.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에 외부전문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것

4.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는 보존 단위용기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름, 관리번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하여 보안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존상자 또는 보존장비에 보존할 것

5.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것

6.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불활성화(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를 말한다)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

7. 그 밖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1의10”을 “별표 1의13”으로 한다.

제22조의5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우역·우폐역·구제역·럼피스킨병·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뉴캐슬병·고병원성”을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뉴캐슬병·고병원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브루셀라병·결핵병·소해면상뇌증·돼지오제스키병·돼지인플루엔자”를 “브루셀라병·결핵병·소해면상뇌증·럼피스킨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인플루엔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병성감정상”을 “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 : 70일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물건이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2. 수입하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사용계획서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수입하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의6까지를 각각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7까지로 하고, 별표 1의7부터 별표 1의10까지를 각각 별표 1의10부터 별표 1의13까지로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8 및 별표 1의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유의사항란 2.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5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21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25서식까지로 하며, 별지 제1호의15서식부터 별표 제1호의2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종류(제2조의3 관련)

구분	가축전염병 분류	병원체명(국문)	병원체명(영문)
세균	제1종	우폐역균	<i>Mycoplasma mycoides subsp. mycoides</i>
세균	제2종	탄저균	<i>Bacillus anthracis</i>
세균	제2종	브루셀라균	<i>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i>
세균	제2종	큐열균	<i>Coxiella burnetii</i>
세균	제2종	비저균	<i>Burkholderia mallei</i>
세균	제3종	야토균	<i>Francisella tularensis</i>
바이러스	제1종	우역 바이러스	Rinderpest virus
바이러스	제1종	가성우역 바이러스	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바이러스	제1종	블루텡 바이러스	Bluetongue virus
바이러스	제1종	리프트게곡열 바이러스	Rift valley fever virus
바이러스	제2종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Lumpy skin disease virus
바이러스	제1종	양두 바이러스	Sheeppox virus, Goatpox virus

바이러스	제1종	구제역 바이러스	Foot and mouth disease virus
바이러스	제1종	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	Vesicular stomatitis virus
바이러스	제1종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African swine fever virus
바이러스	제1종	돼지열병 바이러스	Classical swine fever virus
바이러스	제1종	돼지수포병 바이러스	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바이러스	제2종	광견병 바이러스	Rabies virus
바이러스	제1종	병원성 뉴캐슬병 바이러스	Virulent Newcastle disease virus
바이러스	제1종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igh pathogenicity avian influenza virus
바이러스	제1종	아프리카마역 바이러스	African horse sickness virus
바이러스	제2종	동부말뇌염 바이러스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바이러스	제2종	서부말뇌염 바이러스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바이러스	제2종	베네수엘라말뇌염 바이러스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프리온	제2종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7조의12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소유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가.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나. 고압분무세척기(이동식 고압분무세척기를 포함한다) 2대 이상
 - 다. 분말살포기(입자 또는 분무) 2대 이상
 - 라. 수동식 분무기 2대 이상
 - 마. 신발 소독조 1개 이상
 - 바. 개인보호구(방독면·마스크·보호용 의복·장화·보호안경·장갑) 각각 5개 이상
 - 사. 진공청소기, 세척용 노즐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아. 장비와 인력의 출장 업무가 가능한 차량(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1대 이상
 - 자. 이동식 분무형 대인소독기 1대 이상
 - 차. 이동식 가축의 사체 처리기 1대 이상
 - 카. 발전기 1대 이상
 - 타. 차량진입 차단 바, 줄·문 등 차량 진입 차단에 필요한 장치
 - 파. 출입통제 안내판
 - 하. 야간작업에 필요한 조명 장비
3.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대표자 1명(현장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 나. 현장관리 책임자 1명 이상(수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기사 또는 환경기사(수질·대기·폐기물) 이상 또는 축산산업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격이 있는 자)
 - 다. 현장 작업 인력 3명 이상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소독설비·방역시설 및 방역기준(제7조의15 관련)

1. 소독설비 기준

- 가.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랜더링 장비 또는 차량 외부·바퀴·흡반기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의 방향전환을 위한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이동식 고압분무세척기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둘 것
- 나.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수동식 분무기 또는 고압분무세척기(이동식 고압분무세척기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다.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 라.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설비 외에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위의 소독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2. 방역시설 기준

- 가.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이 있어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다.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독 공간을 마련할 것.

3. 방역기준

- 가. 별표 1의8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 나. 가축폐기물처리업 방역업무 작업 전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서, 인원배치, 개인보호구의 종류, 차량동선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공유할 것.
- 다. 현장관리 책임자는 작업현장별로 안전담당자, 응급조치담당자 및 차량통제담당자를 지정하고, 연락체계 및 역할분담을 작업 전 교육 시 명확히 고지할 것.
- 라. 가축폐기물처리업 방역업무에 참여하는 작업자(이하 “작업자”)의 현황(이름, 국적 등)을 관리하고, 신원 미확인자 또는 출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 마. 작업자에 대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살

- 처분 요령,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작업 전·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 바. 작업자가 작업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사. 개인보호구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환할 것.
- 아. 작업자의 식사·휴식·개인보호구 갈아입기 등이 가능한 안전구역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 자. 안전사고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중지, 작업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및 추가피해 방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는 즉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관리 책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대피시킨 후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
- 차. 작업에 동원된 기구·장비·차량은 철저히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을 마친 후 최소 7일간 축산농장 및 축산관계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할 것. 다만,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카. 작업 전·후에는 작업기구, 운송차량, 처리장 내·외부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것.
- 타. 작업이 2일 이상 진행되어 작업자가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할 때에도 소독, 환복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파. 작업 전·후 축사 내부·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소독할 것.
- 하. 작업 후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거. 농장 내 부분적으로 살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는 가축에 오염원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동동선을 정하고, 청소·소독을 철저히 할 것.
- 너. 작업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치료기관 및 치료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 시 시·군·구와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더.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계획서, 안전교육 실시 내용, 개인보호구 지급·점검 현황, 작업자 명부, 차량·장비 세척·소독 내역, 사고 및 아차사고의 발생 및 조치 결과 등을 기록·보존할 것.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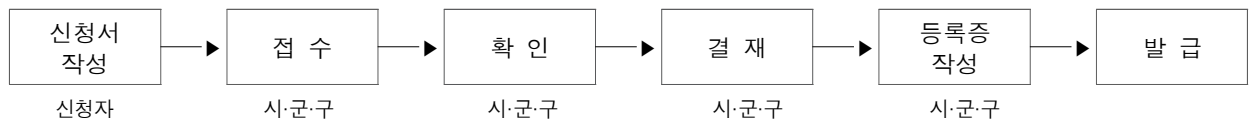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

고유번호:

영업장 명칭: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뒤쪽)

[illegible]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대장

1. 등록내용

영업장	고유번호	등록일자
	명칭(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변경신고 등

구 분	신 고 자	신 고 내 용	비 고	기 재 자

3. 벌칙 및 행정처분 등

구 분	처 분 일 자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의 내용	이 행 여 부	기 재 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영업장	고유번호	등록 연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신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변경 사유	[]소재지 []명칭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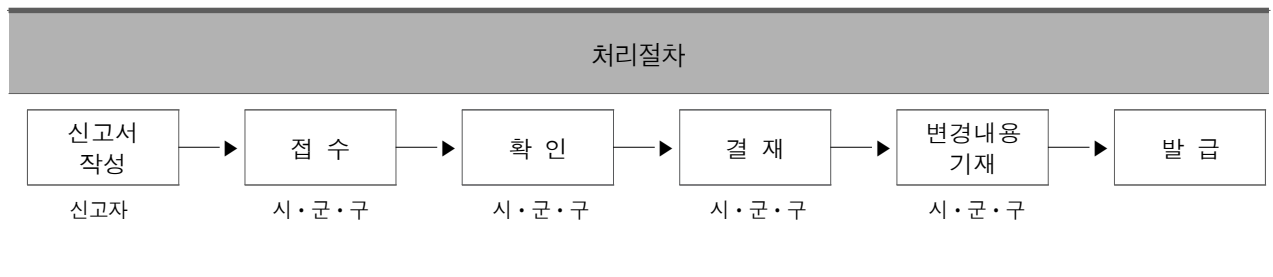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9서식]

[] 휴 업
가축폐기물처리업의 [] 폐 업 신고서
[] 영업재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장	상호(명칭)	고유번호	
	소재지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일시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사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	-----------------	-----------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0서식]

가축폐기물처리업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대장

신고 번호	신고 일자	신고자 성명 (법인명)	영업장 고유번호	영업장 명칭	신고내용	비고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병원체 명칭	종속명		
		보통명		
	병원체 특성(혈청형, 독소형, 유전자형 등)			
	병원체 검사방법			
분리정보	기원			
	검체명			
	분리목적, 역학정보			
	분리일			
보유여부	[]보유 []폐기			
	` 보유목적 (보유 시에만 작성할 것)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유의사항	병원체 검사방법에는 혈청형, 독소형, 유전자형 등 특성 결정을 위한 검사방법을 포함하여 해당 병원체의 동정을 위해 실시한 검사방법을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경위서

검체 채취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병원체 분리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검체 채취장소 (지번)		
검체 채취일		
분리정보	기원	
	검체명	
	분리목적, 역학정보	
	분리일	
일자별 분리과정 (검체 채취 및 병 원체 확인을 위하 여 실시한 세부검 사 방법 포함)		
그 밖의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분리경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

신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병원체 명칭	종속명	
		보통명	
	병원체 특성(혈청형, 독소형, 유전자형 등)		
	병원체 검사방법		
	관리번호		
분리정보	기원		
	검체명		
	분리목적, 역학정보		
	분리일		
보유여부	[]보유 []폐기		
	보유목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이동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분양하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분양받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취급시설	안전등급	[] BL1		[] BL2		[] BL3		[] BL4	
	시설등록번호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일련 번호	관리번호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포장형태 (단위)	수량	비고 (용도 등)	분양·이동 예정일	수송 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양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2. 분양받으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사용계획서 1부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분양받으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이동신고 확인서

분양하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분양받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포장형태 (단위)	수량	비고 (용도 등)	이동 예정일	수송 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
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양·이동계획에 대한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이동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고,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자	[] 보내는 기관	[] 받는 기관							
보내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받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일련 번호	관리번호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포장형태 (단위)	수량	비고 (용도 등)	이동 예정일	수송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대표자)

(직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동하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사용계획서 1부 2. 이동하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이동하려는 기관이 신고자가 되며, 이 경우 신고자는 상대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신고자	[] 보내는 기관 [] 받는 기관								
보내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받는 기관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직위		소속					
		팩스번호		전화번호					
고위험 가축 전염병 병원체	일련 번호	관리번호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포장형태 (단위)	수량	비고 (용도 등)	이동 예정일	수송 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계획 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20 년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

보고자	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자		성명 소속/직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고위험 가축 전염병 병원체 보유 현황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병원체명	병원체 특성	포장형태 (단 위)	수량	변동사유	보유상태	보유장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보유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대표자)

(직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15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인 경우	35일
품명 학명				
수량 및 포장수량(종량)				
산지 또는 사유지				
수송 방법 및 경로 (우편물의 경우 발송지)				
수입 목적				
보내는 사람의 성명·주소				
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수입예정항(비행장) 및 도착예정연월일				
수송 중 포장 상태				
수송 후 관리방법 및 장소				
이용기간 및 이용후 처리방법				
수입 후의 관리책임자 성명·주소				
그 밖의 참고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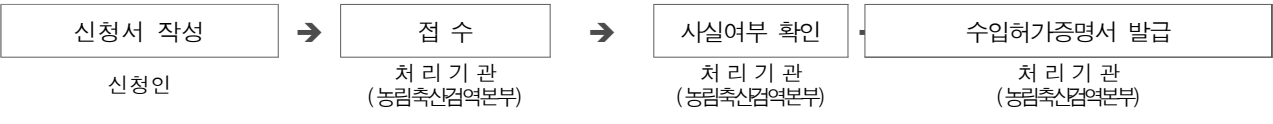
주소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주소·성명)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인 경우에 한함 >
	1.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2. 수입하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사용계획서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수입하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신문용지 54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령진드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u><신설></u>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u>제2조의2(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u>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령진드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

<u><신 설></u>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생 략)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u>별표 1</u>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생 략) ③·④ (생 략)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u>별표 1의2</u>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⑦ (생 략)	<u>병 매개체</u> 제2조의3(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종류는 <u>별표 1과 같다.</u>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별표 1의2</u>----- ----- -----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별표 1의3</u>----- ----- -----. ⑥·⑦ (현행과 같음)
---	--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③ (생략)

제7조의9(소독·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방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③ (생략)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6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

----- 별표 1의4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9(소독·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① -----

----- 별표 1의5-----.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

----- 별표 1의6과 ---.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별표 1의7-----
-----.

② ~ ④ (생 략)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12(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의5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
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②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가
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가축폐
기물처리업 등록신청서에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③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
여 별표 1의8에 따른 기준을 갖
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폐
기물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
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
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폐기

<신 설>

물처리업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의13(가축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의5제
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
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축폐
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의18서식의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가축폐
기물처리업 등록증과 변경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
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제1
호의17서식의 관리대장에 그 변
경내용을 기록·비치하고, 변경
사항을 적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신 설>

제7조의14(가축폐기물처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의
5제2항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를 신고하려

는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9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1호의20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설>

제10조(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 (생 략)

<신 설>

3. 4. (생 략)

송부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15(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조의8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독설비·방역시설 및 방역기준은 별표 1의9와 같다.

제10조(가축방역사)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수의사법」 제16조2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갖춘 자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③ ~ ⑤ (생략)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 등) ①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5서식의 의뢰서에 수의과학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7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

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방역본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 등) ①-----

----- 별지 제1호
의21서식-----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1의10-----
----- 별
지 제1호의22서식-----

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해야 하고, 검역본부장은 가축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시·도가축방역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
호의16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
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
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본
부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17서식의 가축
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
발급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

----- 별지
제1호의23서식-----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1
호의22서식-----

----- 별지 제1호의23서식-----

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19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해 별표 1의9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1호의24서식-----

-----.

⑤ -----
-- 별지 제1호의25서식-----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

--- 별표 1의11-----.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1의12-----
-----.

③ ~ ⑤ (생 략)

<신 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2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경위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 ·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2. 분양받으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사용계획서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분양받으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7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동하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사용계획서
2. 이동하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검역본부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고위험가축

<신 설>

전염병 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사용 및 보유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당해 연도(12월 31일 기준)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4(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
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
가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2.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전
담관리자를 둘 것

3.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과 관련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
급시설에 외부전문가,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 전담관리
자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
를 설치·운영할 것

4.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는
보존 단위용기에 고위험가축
전염병 병원체의 이름, 관리번

	<u>호 등 식별번호, 제조일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하여 보안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존상자 또는 보존장비에 보존할 것</u> <u>5.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취급구역 및 보존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것</u> <u>6.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불활성화(폐기하지 아니하면서 영구적으로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처리를 말한다)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u> <u>7. 그 밖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 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 치기준은 <u>별표 1의10</u> 과 같다.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 ----- <u>별표 1의13</u> -----.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제2조의4(오염우려물품) 법 제2조제10호나목-----
1. ~ 9. (생 략)	-----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1. (생 략)	-----
1의2. 렙피스킨병	-----
2. ~ 4. (생 략)	-----
② ~ ④ (생 략)	-----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1. 제1종가축전염병 : <u>우역·우폐역·구제역·렙피스킨병·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뉴캐슬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u>	① -----
2. 제2종가축전염병: <u>브루셀라</u>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

	1. ----- <u>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뉴캐슬병·고병원성</u> -----

	2. ----- <u>브루셀라병</u>

병 · 결핵병 · 소해면상뇌증 · 돼지오제스키병 ·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 · 광견병 ·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3. (생략)

② (생략)

③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가축을 사살·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타격·약물사용 등의 방법으로 즉시 살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병성감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하여 살처분의 연기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 결핵병 · 소해면상뇌증 · 림
프스킨병 · 돼지오제스키병 ·
돼지인플루엔자-----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역학조

사 또는 병성감정상 -----

1. · 2. (현행과 같음)

3. 럽피스킨병에 걸린 소 : 70일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 ⑦ (생 략)

제32조(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
가를 받으려는 물건이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고위험가축전염
병 병원체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
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
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2. 수입하려는 고위험가축전염
병 병원체의 사용계획서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수입하려는 고위험가축전염
병 병원체의 국내 운반계획서
(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
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19